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의무운행 기간 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보조금 회수요율을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경우 20퍼센트로 정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현행 2009년 이전에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2014년 이전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까지로 확대하고,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공항의 지상조업장비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을 “수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받은 경우에는”을 “수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아목까지의”를 “아목까지의(「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제2호사목부터 아목까지”

로 한다)”로, “제외한”을 “제외한 자동차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상조업장비로서 2006년 이전에 제작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는”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으로, “자동차 중”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자동차”를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79조의3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제79조의4제1항제1호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79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중 “제작서·종류·용량”을 “제작서·종류·용량·에너지밀도”로 한다.

제120조의3제3항 중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로, “검사합격증을”을 “검사결과서를”로 한다.

제12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사합격증”을 각각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합격증 또는”을 “검사결과서 또는”으로, “검사합격증에”를 “검사결과서에”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종류란 중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를 “지게차”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한다”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2호아목 비고 제9호가목 본문 중 “2020년 1월 1일 이후”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로 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1년 1월 1일 이후”를 “2021년 1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로”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같은 표 제2호아목 비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24년 9월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5년 9월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4년 8월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5년 11월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9호가목

본문을 적용한다.

나. 2024년 9월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5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4년 8월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5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5년 11월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9호나목 본문을 적용한다.

차종	구분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측정방법
소형·중형화물차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088 g/km 이하	8.04×10^{11} #/km 이하	RDE-LDV
	RW ≤ 1,305kg	0.088 g/km 이하	8.04×10^{11} #/km 이하	
	1,305kg < RW ≤ 1,760kg	0.116 g/km 이하	8.04×10^{11} #/km 이하	
	RW > 1,760kg	0.138 g/km 이하	8.04×10^{11} #/km 이하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0%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20%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만 적용한다)	20%

별표 21의2 제1호나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
기계의 사용기간 중 “60개월”을 “96개월”로 한다.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앞면 중 전기자동차 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 자동차 제원	⑦제작사 (제작연도)	⑧자동차 명칭(형상)	⑨자동차 형식(용도)	⑩차종	⑪차대번호	⑫1회 충전 시 주행거리(주행 모드)
	⑬주 배터리 종류 (제작사)	⑭주 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⑮주 배터리 에너지밀도 (Wh/kg)	⑯탑재 충전기 정격입력전력 (충전용량, kW)	⑰구동 모터제원	⑱차량 총 중량
					형식 : 최대출력(kW) : 최대토크(N·m) :	
	⑲공차 중량	⑳충전구 규격	㉑최대 속도	㉒구동형태	㉓내연기관 제원	㉔시험에 관한 사항
					사용연료 : 배 기 량 : 출력/토크 :	실도로 부하력(hp) : 도로흡수력계수 : 코스트다운 시간(sec) :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관한 적
용례) 제79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2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30일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동식 지게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전동식 지게차(법 제46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는 저공해건설기계로 본다.

제	호(Certificate No.:)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			
업 체 명 (Company)			
대 표 자 (Representative)		사 업 자 등 록 번 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 소 (Address)		전 화 번 호 (Phone number)	
신 청 일 (Application date)		시 험 기 관 (Testing institution)	
시 험 책 임 자 (Testing Manager)	(서명/Signature)	시 험 담 당 자 (Tester)	(서명/Signature)
시 험 방 법 (Testing method)			
1. 검사결과(Inspection result)			
시 료 (로 트) (Sample (Lot))	시 험 항 목 (Testing item)	기 준 (standard)	시 험 결 과 (Testing result)
2. 적합여부(Final result): []적합(Conformity) / []부적합(Non Conformity)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We hereby issue a 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 2, Article 74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Para. 3, Article 120-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직인	

제 호(Certificate No.:)			
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			
업 체 명 (Company)			
대 표 자 (Representativ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 소 (Address)			
전 화 번 호 (Phone number)		시 험 기 관 (Testing institution)	
첨 가 제 명 (Additive name)		첨 가 제 종 류 (Additive type)	
첨 가 제 사 용 연 료 (Fuel type of Additive)		최대 첨가비율 (첨가제 / 연료) (Maximum additive ratio (Additive/Fuel))	
제 조 자 (제 조 국) (Manufacturer(Country of manufacture))		신 청 일 (Application date)	
시 험 책 임 자 (Testing Manager)	(서명/Signature)	시 험 담 당 자 (Tester)	(서명/Signature)
1. 항목별 검사결과(Inspection result for each item)			
시험항목(Testing item)		시험결과(Testing result)	
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 Manufacturing standards of automobile fuel (Attached Table 33 (1), Enforcement Rules of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 적합(Conformity) [] 부적합(Nonconformity)	
나. 유해중금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 가목) Hazardous heavy metals (Attached Table 33 (2)-1, Enforcement Rules of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 적합(Conformity) [] 부적합(Nonconformity)	
다.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 나목) Exhaust gas (Attached Table 33 (2)-2, Enforcement Rules of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 적합(Conformity) [] 부적합(Nonconformity)	
2. 최종결과(Final result): [] 적합(Conformity) / [] 부적합(Nonconformity)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We hereby issue a result of additiv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 2, Article 74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Para. 3, Article 120-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직인	

(뒤쪽)

<변경 사항> (Changes)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참고 사항> (Reference)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변경 사항> (Changes)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참고 사항> (Reference)

일 자 (Date)	내 용 (Details)	비 고 (Note)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u>「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u>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 ----- ----- ----- ----- ----- -----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u>「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u>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u> -----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 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
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
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 제출(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

----- 수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
-----.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생략)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検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버스의 경우에는 “제2호사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
제외한 자동차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상조업장비로서 2006년 이전에 제작된 ---

2.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
-----.

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

-----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u>자동차</u> ③ (생략)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용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 가. ~ 라. (생략) <u><신 설></u> 마. (생략) 2. (생략)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	<u>른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u> 3. ----- ----- ----- ----- ----- <u>자동차 및 건설기계</u>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용자기준) ----- ----- ----- ----- -----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u> 바. (현행 마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
--	--

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5년

2. (생략)

② (생략)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 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 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생략)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라.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

-----.

1. -----
----- 8년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작서·종류·용량
·에너지밀도 -----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 검사결과서
를 -----.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 서식의 첨가제 <u>검사합격증</u> 원 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 의2서식의 촉매제 <u>검사합격증</u>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에는 첨가제 <u>검사합격증</u> 또는 촉매제 <u>검사합격증에</u>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 야 한다.	1. ----- ----- <u>검사결과서</u> ---- ----- -- 2. ----- ----- <u>검사결과서</u> ----- -- ③ ----- ----- ----- <u>검사결과서</u> 또는 - ---- <u>검사결과서에</u> ----- ----- -----.
---	---